》》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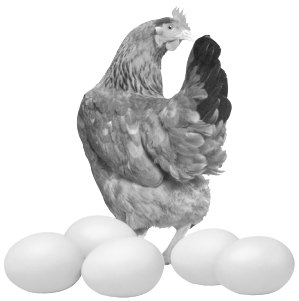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하게 되며 '13년 허가 대상 농가는 '14년 2월(유예기간 1년)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10년~'11년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우리 축산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미지 추락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 바 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구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를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월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는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축사면적 2,500㎡ 이상)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14년에는 전업농가(축사면적 1,400㎡ 이상), '15년에는 준전업농가(축사면적 950㎡ 이상), '16년에는 축사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계분야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적용시기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오는 2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2013~2016, 4년간)에 걸쳐 허가제가 도입(기존 50㎡ 이상 사육규모 등록농가)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축사면적 2,500㎡ 이상 2013. 2. 부터 기업농가	축사면적 1,400㎡ 이상 2014. 2. 부터 전업농가	축사면적 950㎡ 이상 2015. 2. 부터 준전업농가	축사면적 50㎡ 이상 2016. 2. 부터 소규모농가

축산업 허가제 간략보기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의무교육 네가지로 기존사육농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 시행('13.2월)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위치는 제외)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위치기준은 주거밀집지역, 도로 인근, 축산관련시설(도축장 · 사료공장 · 집유장 등)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기존 농가는 적용대상이 아님)

둘째, 시설기준에는 방역 및 소독시설, 축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축종별 ·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완화된 기준 적용) 할 예정이다.

셋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넷째, 의무교육기준은 신규 농가(24시간), 허가 대상농가(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6시간)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시간을 정할 계획이며, 허가대상은 2년 주기로, 가축사육업 대상농가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기준(안)

○ 종계업

구 분	시설 및 장비
종축	○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닭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질병 검사결과 음성일 것
축사시설	○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 종계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종계 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 ·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집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 종란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단, 부화업을 함께 영위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 내 종란보관실을 갖추어야 한다. ○ 종란보관시설에 온 ·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시설	○ 정문 및 축사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의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종계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 담장 등을 설치할 것 ○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 허가 후 출입
인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3) 종계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기타	○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 및 판매 기록 관리대장을 갖출 것

○ 부화업(닭, 오리)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 종계(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시설	○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발생기 등)를 설치할 것 –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하되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 종란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 종란보관시설에 온 ·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시설	○ 정문 및 축사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의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 담장 등을 설치할 것
부화장 관리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 종란 수불 대장(입란, 부화, 판매 등)을 갖출 것

○ 가축사육업(산란계, 육계)

구분	시설 및 장비 (축사면적 : 산란계1,300㎡, 육계1,400㎡, 오리1,230㎡ 이상)	시설 및 장비 (축사면적 : 산란계1,300㎡, 육계1,400㎡, 오리1,230㎡ 미만)
축사 시설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지하수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의 물로 공급할 것 ○집란실은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산란계에 한함)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설치할 것(산란계에 한함)	○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지하수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의 물로 공급할 것 ○ 집란실은 환기시설 설치할 것(산란계에 한함)
소독 시설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을 설치할 것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별도 시설설치로 차단바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할 것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차량 소독시설이 없을 경우 차량소독 할 수 있도록 생석회 비치 및 살포할 것 ○ 차량진입 차단 바(줄)를 설치할 것 –별도 시설설치로 차단바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 ○ 방문차량기록부를 비치할 것 ○ 출입자의 소독 가능한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비치할 것 ○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비치할 것 ○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차량,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자연경계 인정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 포함) 설치	○차량,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자연경계 인정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닭 : 마리당 적정면적)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 란 계	케 이 지		0.05㎡/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수	

○ 위치기준

가. 주거지역

축종 및 규모	돼지			닭 · 오리		
	2천두 이하	3천두 이하	3천두 이상	6만수 이하	9만수 이하	9만수 이상
제한거리(m)	180	250	320	180	250	320

나. 지방도 이상 도로 : 30m이내

다. 축산관련시설 : 500m이내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종축업) 임.

○ 의무교육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기본교육	신규 진입농가		24	축산법규(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 친환경축사 및 동물복지(3), HACCP(2), 실습(6), 선택과목(6)
	허가대상 (축사면적 50㎡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사 및 동물복지(2), HACCP(2), 선택과목(4)
		사육경력 3년 이상	8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사 및 동물복지(2), 선택과목(2)
	등록 대상 (축사면적 50㎡미만)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사 및 동물복지(2)
보수교육	허가 대상		8	
	등록 대상		4	

(정리 | 최인환 기자 enani85@naver.com)